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2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07호, 2013. 8. 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및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안 제13조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제22조 제3항"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본문의 "법 제22조 제2항"을 "법 제22조 제3항"으로 바꿈

나.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4조 개정)

- (1)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범위가 법 개정으로 “기존규제의 정비”에서 “애로사항 해결”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ombudsman지원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번지 동덕빌딩 2층 ombudsman지원단(전화 : 02-730-2491, Fax : 02-2100-49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부즈만은”을 “음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제”를 “규제와 애로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권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규제”를 “규제와 애로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완화”를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비”를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규제”를 “규제와 애로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개선”을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임 기 및 자격 등) ① (생략)</p> <p>② <u>법 제22조제2항</u>에서 “학식 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3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임 기 및 자격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u>법 제22조제3항</u>-----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직 무 등) ①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1. 불합리한 <u>규제</u>에 따른 중소 기업의 고충처리</p> <p>2. <u>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u>의 개선 건의</p> <p>3. 중소기업 관련 <u>규제</u>의 조사 · 분석</p> <p>4. 중소기업 관련 <u>규제</u>의 <u>완화</u> 에 대한 평가 및 분석</p>	<p>제14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직 무 등) ① ----- <u>ombudsman은</u> <u>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u> ----- ----- ----- -----.</p> <p>1. ----- <u>규제와 애로사항</u>- -----</p> <p>2. <u>업무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권고</u></p> <p>3. ----- <u>규제와 애로 사항</u>-----</p> <p>4. ----- <u>완 화와 애로사항 해결</u>-----</p>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5. -----
-----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

6. ----- 규제와 애로
사항-----

7. -----
-----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

②·③ (현행과 같음)